

의안번호	2209854
의 퇴 인	위성곤의원
회 답 일	2025.5.16.
추계번호	25D23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 대상기관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억 8,200만원, 2030년 6억 2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29억 200만원(연평균 5억 7,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사전신고 면제 대상기관 축소 (안 제108조제3항)	582	559	572	587	602	2,902	580

주: 1. 사전신고 면제 대상기관 축소(안 제108조제3항)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개정안에 따라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8제1항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의 범위를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 정당 또는 인물에 대한 지지도·인지도 또는 선호도에 관한 여론조사 등으로 규정	의무규정
2	안 제8조의9제7항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위반행위로 고발·기소되거나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과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108조제3항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 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에 대한 서면신고를 면제받는 기관의 범위에서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을 제외함	의무규정
4	안 제108조제7항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등을 등록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의8제1항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미대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선거여론조사의 범위를 법적으로 명시한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2	안 제8조의9제7항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	·미대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기존 인력과 자원 등을 활용하여 수행가능할 것으로 예상
3	안 제108조제3항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
4	안 제108조제7항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미대상 선거여론조사기준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와 관계가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라 함)에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를 면제받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규정하여 여심위의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 증가¹⁾가 예상되므로 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
- 개정안에 따라 7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에 소요되는 보수, 기본경비,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를 추계함
 - 본 추계에서는 기존 유사 개정안의 비용추계 등을 참고하여 여심위에 공무원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사전신고 건수는 2,572건이며 현재 사전신고를 면제받고 있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등(현행법 제108조의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이 사전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신고건수는 4,096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여심위는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7명 증원 시 기존 공간을 재배치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무실 임차료는 고려하지 않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
-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7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보수, 기본경비,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로 한정하여 추계
- 본 추계에서는 직급별 인원에 직급별 보수를 곱하여 총 보수를 산출한 후, 기본경비 비율, 기관부담금 요율, 1인당 자산취득비를 활용하여 각 비용을 산출
 - (보수) 2026년 4억 5,600만원, 2030년 5억 100만원으로 추정
 - － (인원)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 － (1인당 보수) 2025년 기준 직급별³⁾ 보수에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 보수 상승률⁴⁾ 적용
 - (기본경비) 2026년 3,100만원, 2030년 3,400만원으로 추정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5년 기준 기본경비 비율은 6.7%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
 - (기관부담금) 2026년 6,000만원, 2030년 6,700만원으로 추정
 - －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값 적용⁵⁾
 - (자산취득비) 2026년 3,500만원
 - －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총 인원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498만원⁶⁾을 곱하여 산출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4)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3%	1.9%	2.0%	2.0%	2.0%	2.0%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예산안 각목명세서

4) 2025년 3%, 2026년 이후는 2023~2025년 평균 상승률 2.4%를 적용

5) 2026년 13.1%, 2027년 13.1%, 2028년 13.2%, 2029년 13.3%, 2030년 13.4%

6)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결과, 2020년 기준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4,197,000원이고 소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1인당 자산취득비 산출

[표 2] 공무원 증원에 따른 보수 등 추정: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1인당 보수 (원)	5급	89,584,706	91,734,738	93,936,372	96,190,845	98,499,425
	6급	70,285,076	71,971,918	73,699,244	75,468,026	77,279,259
	7급	56,324,020	57,675,797	59,060,016	60,477,456	61,928,915
보수 (백만원)	5급(1명)	90	92	94	96	98
	6급(2명)	141	144	147	151	155
	7급(4명)	225	231	236	242	248
	소계(a)	456	467	477	489	501
기본경비(=a×6.7%)		31	31	32	33	34
기관부담금(=a×요일)		60	61	63	65	67
자산취득비		35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 대상기관을 축소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5억 8,200만원, 2030년 6억 2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29억 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수	456	467	477	489	501	2,390
기본경비	31	31	32	33	34	161
기관부담금	60	61	63	65	67	316
자산취득비	35	—	—	—	—	35
합계	582	559	572	587	602	2,90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 대상기관의 축소로 인한 업무의 증가로 공무원(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증원을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